

## 민주당 선대위, '법무부는 윤석열 후보의 시력검사기록 즉각 공개해야!'

- 2.9.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법무부에 윤석열 후보 신체검사기록(시력 검사 포함) 정보공개 청구
- 2.18. 법무부, 비공개 결정 통보
- 민주당 선대위, '법무부는 윤석열 후보 시력검사기록 즉각 공개해야'
  - '윤석열 후보도 직접 나서서 병역기피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단장: 양부남)은 법무부에 윤석열 후보의 1994년 및 2002년 시력검사 정보 포함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법무부의 '윤석열 후보의 시력검사기록 등 신체검사 기록에 관한 (정보) 비공개 결정' (2022.2.18.)이 위법·부당함에 따라, 법무부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즉시 윤석열 후보의 시력검사기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 9일 법무부를 상대로 윤석열 후보의 「1994년 공무원(검찰) 채용 시 신체검사기록 일체(시력검사기록 포함)」 및 「2002년 공무원(검찰) 채용 시 신체검사기록 일체(시력검사기록 포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18일 윤석열 후보의 신체검사기록이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19일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7일(공휴일 제외 28일까지)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률지원단은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첫째, 법무부의 설명대로 윤 후보의 시력검사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보유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정보공개법 제3조),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그 정보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에만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대법원 판례를 봐도,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는 비공개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이익과 공개에 따른 공익을 비교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붙임1 참조).

법률지원단은 윤 후보가 2019년 6월 검찰총장 후보 적격심사 과정에서 이미 1982년 징병신체검사 때의 시력과 청문회 후 당시 오신환 국회의원에게 제출할 용도로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진단받은 시력을 공개한 바 있다고 밝히며, 이번에 법률지원단이 청구한 공개정보는 현재의 윤 후보 사생활과 관련이 없는 과거 검사 임용을 위한 시력 정보로써 공개되어도 침해될 사생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검사 임용 당시 시력정보와 징병신체검사 당시 시력정보는 비교·대조할 경우 병역기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정보라며,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12년 후에 받은 검사임용 시점 기준 ‘과거보다 시력이 좋아질 수 없다’는 자연법칙이 존재한다는 점, △검사임용 당시에 허위 시력정보를 제출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거짓 시력정보를 제출할 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994년 및 2002년 시력검사 정보는 매우 신뢰성이 높은 정보라고 설명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에 “이 사건 대상 정보를 공개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비밀은 없는 반면, 유력 대통령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검증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며 “법무부는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거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선 후보 병역기피 의혹 검증이라는 공익을 위해 윤석열의 두 차례 검사 임용 시 제출한 시력 정보를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붙임2 참조).

또한 시력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윤 후보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부당 병역면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대선후보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라며 “자발적으로 시력검사기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끝)

※[붙임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붙임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